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4.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21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능 정비(안 제4조)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 명시(안 제11조)
- 다.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변경(안 제33조, 안 제91조)
- 라. 지방청사 설계면적 기준 정비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 신설(안 제45조 관련 별표 1)
- 마.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기준 보완(안 제61조 관련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3. 7. ~ 3. 27./20일간) 결과: 의견 있음

- 구청사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의회 청사에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 신설 요구가 있어 반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2023.8.22.)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의)¹⁾에서 명시한 심의회의의 심의 사항에 따라 정비한

1)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의)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것이며,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 2)를 반영하여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본 조례의 제4조제2항제4호3)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게 함.

- 안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4)및 공유재산법 제16조제1항5)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의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구의회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및 제9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에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안 제45조 관련 별표 1(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서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와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시행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2023.12.)

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5)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사항을 마련함. 최근 청소근로자 사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조항⁶⁾이 신설되었으나, 정부기관 내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안건⁷⁾을 의결함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구(區)는 이를 적용하여 추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의무시설 면적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짐. 아울러 구청사, 구의회 모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됨.

- 안 제61조 관련 별표 2(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 2023.10.4.)의 개정사항에 따른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품종구분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

6)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리대학, 국리대학법인에 「정부청사관리규정」,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 조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2022.2.14.)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4.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22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조정 (안 제5조제1항)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안) 45만원 미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제56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2. 29. ~ 2024. 3. 27. / 27일 간):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것을 참고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 기준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함.
- 검토 결과
 -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¹⁾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있고, 우리 구(區)는 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고지서 1매 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함.

1)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교부 혹은 전자송달의 방법은 우편의 방법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전자송달의 방법에 동의한 자에 한하므로 통상적으로 일반우편 혹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난 23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²⁾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이 물가상승률³⁾을 반영하여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⁴⁾을 통해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

2) 연도별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단위: 만 원)

연도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85	5
'89	10
'01	30
'24	45

3) 물가상승률* (출처: KOSIS)

시점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	평균 상승률
2001	전국	65.72	77.98	74.62	약 55%
2022	전국	107.72	118.78	109.79	

* 국회 410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중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에 대해 다양한 기준안이 제시되었고, 45만 원(50% 인상) 수준의 절충안으로 의결된 바 있음.

** GDP디플레이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값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

4)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참고	조례 개정 동반 검토 필요(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p>□ (현황)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방법은 조례로 위임(기본법 §30①)</p> <p>- (조례) 원칙 - 등기우편 / 예외 - 고지서당 30만원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p> <p>□ (개정 검토)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므로, 자치단체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 관련 조례 개정 검토</p>	

관련 조례 또한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음.

- 따라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 기준을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 30만 원 이상 45만 원 이하의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4.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23호로 2024년 4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 소멸
및 감면 적용시한 만료로 불필요한 감면 규정 폐지 및 서민생활 지
원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면 유지하고자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안 제4조의2)
- 나. 현행 조례 제1조 ~ 제18조 적용시한을
2026.12.31.까지 연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이 소멸하고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익이 없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를 삭제함.
 -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 안 부칙 제3조(적용시한)에서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함.

○ 검토 결과

- 현행 조례 제4조의2는 코로나19로 인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 등에 관한 감면 조항으로 2022년 4월 7일 신설된 바 있음. 그러나 2023년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면서 관내 5개소에 임시로 설치하였던 선별진료소가 철거되었으며,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됨.
- 아울러, 해당 조항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신설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¹⁾,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²⁾에 따른 일몰제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추후 감염병에 따른 감면 사항은 제한된 일부에 감면을 해주는 “간접 방식”보다는 지방세수 변동에 수반하지 않는 “직접 방식³⁾”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짐.
- 한편, 본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감면에 한 정하여 3년 이내의 일몰제⁴⁾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하단의 조례에 따라 지원의 근거는 존재한다고 여겨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음.

※감면 실적(2020년~2022년)

연 번	감면조항	감면실적(천 원)
연평균 감면액		3,898
1	문화재에 대한 감면(제3조)	-
2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제4조)	355
3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조의2)	104
4	외국인투자 유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5조)	-
5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6조)	-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제7조)	-
7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제7조의2)	-
8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8조)	-
9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제9조)	-
10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제9조의2)	3,398
11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7,837

- 적용시한이 도래하기 직전 3년간(2020년~2022년)⁵⁾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은 3,898천 원으로 법 제4조제3항⁶⁾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區)의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비율은 1.6%로 같은 법 제4조제6항⁷⁾에 따라

4)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자치구의 경우 직전 3년간 연평균 10억)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7)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영등포는 1.6%)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

전전년도(2022년) 지방세 징수 결산액에 1.6%를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감면 규모 또한 적합하다고
여겨짐.

※ 감면 규모

$$\text{'22년도 지방세 징수 결산액(214,460백만원)} \times 1.6\% =$$
$$\text{'24년도 지방세 감면 규모 상한액(3,431백만원)}$$

- 아울러 조례의 지방세 감면시한이 '23.12.31.자로 만료되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3.12.31.까지였으나, 집행기
관에서는 제251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있어 보임. 본 개정조
례안 부칙 제2조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경우부터 소급⁸⁾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 제9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감면 및 세액공제가 이미
적용된 건이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입법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8)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상태의 존속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호 문제
로서,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일 경우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형성의
자유가 비교적 넓게 인정됨(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